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 ‘20년에 신설한 장려금에 대하여 언론, 일선 현장 등은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 그간의 지급실태 분석,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① 지원요건 완화

-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 등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u>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u> 정하여 운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u>정년을</u> 정하여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 운영. <u>다만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 1년이내)</u>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 운영 (<u>단서 삭제</u>)
○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u>3개월</u> 이내 재고용	○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u>6개월</u> 이내 재고용

②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요건 완화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20%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10인 이하 기업에는 3명까지 지원
-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라도 1년이상 계속고용되는 경우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임금을 한도로 지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임금 50만원 이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식) <u>매 분기별로 지급</u> ○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u>20%</u> 한도 - <u>피보험자수가 5인이하의 경우에는 한도 2배(40%)</u>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u>30%</u> 한도 - <u>피보험자수가 10인이하의 경우에는 3명까지 지급</u> ○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③ 신청기간 완화

- 고용보험법 제107조 3년 소멸시효 적용으로 **1년 이내 신청요건 삭제**
- * (현행) 지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개정) 삭제

④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완화

-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 신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도래한 근로자**
- 피보험기간 1년미만 근로자 및 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현행	개정(안)
<p>제6조(지원제외 근로자)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 지원대상(제1항):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 ③계속고용 조치에 따라 계속고용 ○ 지원제외 근로자(제2항) <삭 제> <삭 제>

5] 지급기간

- 사업장별 '지원기간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을 '계속고용된 근로자별 각각 2년간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원기간 통일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원기간 기준일*부터</u> 2년까지 지원 ○ 정년도달일이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도달일부터 1년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계속고용된 날부터</u> 2년까지 지급

6] 기타

① '지원기간 기준일(제2조제3호)' 삭제

- '지원기간 기준일'을 이용하여 요건을 규정한 최초 신청기한, 지원제외, 지급한도 등의 개정으로 '지원기간 기준일' 개념 불필요

* (예) '지원기간 기준일' 속한 연도 직전 연도의 1년간 피보험자수 → 계속고용제도 도입일이 속한 연도 직전 연도

② 지원대상 사업주(제3조제2항 제5호) 요건 신설

- 기존 지원요건의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하지 않은 사업주'에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주'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 제외 (제4조제2호) <신 설>	○ 단서 삭제 (제4조제2호)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2019년 1월1일 이전인 사업주 제외(제3조제2항 제5호)

③ 장려금의 상호조정 (제9조) 및 지급 제한 등(제10조) 정비

- 기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및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용방식으로 조문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고용 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36호, 2021.4.27.시행)」 개정사항* 반영

*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지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2021.4.27.부터 수급 해지 신청 시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㉓ 자구 수정 및 장려금 신청서식 일부 수정·정비

- (자구 수정)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배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서식 수정) ‘지원기간 기준일’ 항목 삭제, 작성방법 등 수정

㉔ 적용례 등

- 개정 규정은 ‘20.1.1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
- 개정 규정 중 제5조제3항(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는 고시개정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
 - * 피보험자수의 20%→30%, 5인 이하 180만원→10인 이하 270만원
- 개정 규정중 제9조제1항(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에 대해서는 2021.4.27. 이후 지원금·장려금 등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 제: 해당 없음

라. 기 타: 개정 고시 첨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p>3. <u>‘지원기간 기준일’이란 처음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u> 나. <u>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u>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3. <삭제></p>

<p>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테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 4. (생략) <p><u><신설></u></p>	<p>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②</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시행령」 제2조 ----- 3. ~ 4. (현행과 같음) 5. <u>2019년 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u>
<p>제4조(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u>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신청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 <p>가. 나. (생략)</p> <p>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p>	<p>제4조(지원요건) -----</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u>이전</u> 2. ----- <p>-----<후단 삭제></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p>

<p>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u>5인</u>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u>한도를 180만원으로 한다.</u></p>	<p>----- -----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u>10인</u>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u>한도는 270만원(3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p>
<p>제6조(지원제외 근로자) <신 설></p> <p><u>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액의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u> <u>2.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u> <u>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u> <u>4.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u> 	<p>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u> <u>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u> <u>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u>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u> <u>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u> <u>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u> <u>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u>

<p>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p> <p>6.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p> <p>가.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p> <p>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p>	<p>5.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제7조(지급기간) ①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한다.</p> <p>1.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전인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2020년 1/4분기 중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고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지원</p> <p>2.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도달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p>	<p>제7조(지급기간)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p>

<p>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p>	
<p>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u>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해당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u> <u>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착오 등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u></p>	<p>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u>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①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개정 규정중 제5조제3항(지원수준 및 지원한도)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 규정중 제9조제1항(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에 대해서는 2021.4.27. 이후 지원금·장려금 등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p>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년 8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2019년 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제4조(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② 삭제

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는 270만원(3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5.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지급기간)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신청 등

제8조(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등)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 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 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개정 규정 중 제5조제3항(지원수준 및 지원한도)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 규정 중 제9조제1항(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에 대해서는 2021.4.27. 이후 지원금·장려금 등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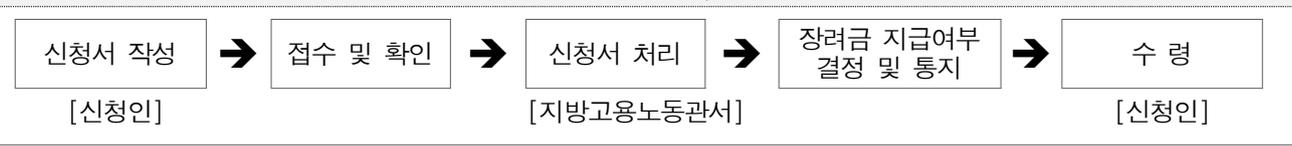
[별지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 ② 장려금의 신청은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해당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예) 20.5. 7 정년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분기 신청기간은 20.5.7.~20.6.30.(2개월)
- ③ 아래 중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표시
 * 정년연장 : 현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폐지 : 현 정년을 폐지한 경우
 재고용 : 현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경우
- ④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이 연장되어 ②의 해당 신청기간 중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자 인원수를 기재
- ⑤ 총 개월 수는 ④의 인원내 대한 각각의 해당 신청기간 내의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함.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3명(’ 20.10.15~ ‘20.12.31), ‘20. 11.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2명 (’ 20.11.15~ ‘20.12.31), ‘20.12.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 20.12.15~ ‘20.12.31)이 있는 경우
 ⇒ (3명×2개월) + (2명×1개월) = 8개월(6개월+2개월)
- ⑥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신청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역일수)에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
 *<예시>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0.15.~10.31.)×3명] + [<해당 고시금액>/30일×16일 (11.15. ~11.30.)×2명]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2.15.~12.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 버림
- ⑦ 장려금 총 신청액 = [⑤의 총 개월수 × <해당 고시금액>] + ⑥의 장려금 합계 금액

※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작성 방법

-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text{해당 고시금액} \times 17\text{일}(10.15. \sim 10.31.) / 31\text{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연장·폐지 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종전 정년 도달일	연장된 정년 도달일	장려금 산정			
					신청(산정)기간	개월수 ^①	1개월 미만 ^②	
							역일수	금액
<예>	홍길동		20.10.14.	21.10.14.	20.10.15~20.12.31 (※고시금액 월30만원 경우)	2개월	17일	164,510
1								
2								
3								
4								
5								
계						개월	X	원

작성방법

-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5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text{해당 고시금액} \times 17\text{일}(10.15. \sim 10.31.) / 31\text{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정년 퇴직일	재고용일	재고용 종료일	장려금 산정			
						신청(산정)기간	개월수 ^①	1개월 미만 ^②	
								역일수	금액
1									
2									
3									
4									
5									
계						개월	X	원	

< 별지 제2호서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2. 지급 내용

지원 유형	지급 내용		
	지급대상 기간	지급 대상자수	지급결정액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관련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